

요약

- 적격연금 중심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은 고소득층에게 절세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 명)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한편,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 강화(월 150만 원 한도 설정 등)로 인해 가입 유인이 감소함
- 현행 세액공제 제도(적격연금)는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 유인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가입률을 더욱 악화시켜 왔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세점 이하 계층에게는 납입액에 비례하는 '매칭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액공제 환급금이 노후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연금계좌환류제도(자동 재예치)를 도입하고,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로 노후 자산축적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50대 가입자를 위한 추가 납입, 그리고 영국과 호주의 사례처럼 '공제한도이월제도'를 도입하여 노후자산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적격연금의 경우 고액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되,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고 시급한 중산층이나 50대에 대해 비과세 납입액의 한도 상향 및 유지기간 단축(10년→7년) 등 차등적 조치를 적용하여 동 집단의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재분배하고, 노후자산 축적 기회 제고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발적 노후준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문제제기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다층 구조 관점에서 연금제도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노후소득 공백 문제는 여전한
 - 그동안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와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연금제도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립되지 못함
-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적격연금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비적격연금²⁾으로 구분되나 적격과 비적격연금 모두 제도개혁 과정에서 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
 -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 명)인 저소득층은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을 보완하여 면세자에게 자산 형성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 강화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자발적인 노후준비 동기를 저해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개인연금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을 진단하되, 세제적격 및 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하여 개인연금 세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현황 및 과제

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은 퇴직연금 본인부담분과 합산해 납입 시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수령 시 연금소득(원금과 이자)에 대해 과세됨
 - 납입 시 보험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납입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음(총급여 5천5백만 원 이상 13.2%, 그 이하면 16.5% 적용, 지방세 포함)
 - 수령단계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가,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세 3.3~5.5%, 지방세 포함)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4조)

1) 납부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을 적격개인연금(적격연금)이라 하며, 여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본인부담으로 구성되는 개인형RP가 있음

2) 수령 시 비과세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을 비적격개인연금(비적격연금)이라 하며, 여기에는 연금보험이 있음

- 수령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를 허용함으로써 과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

〈표 1〉 연금저축의 세제 특성

| 구분 | 연금저축계좌(세제적격) |
|-----------|---|
| 취급회사 | 은행(신탁), 증권사(펀드), 생·손보사(보험) 등에서 확정형으로 일반적으로 제공함(생보사는 종신연금 가능) |
| 예금자 보호 | 1억 원(펀드는 허용되지 않음) |
| 납입 시 세제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세액공제율: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상 13.2%, 그 이하면 16.5%) |
| 급부 시 세제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액 1,500만 원 이하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세) • 일시금(연금액 수령한도 이상) 및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주: 세율은 지방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수치임

○ 연금저축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원칙이 변경된 이후 지속적인 세액공제 확대(연 400만 원→900만 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과 수입보험료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연금저축 가입률(수입보험료)은 2013년 14.8%(8.9조 원)에서 2022년 9.9%(5.4조 원)로 감소함

〈표 2〉 공제유형 및 공제한도 변화 등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

| 구분 \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20년 | 2022년 |
|---------|--------|-------------------------------------|----------------|----------------|--------|
| 공제유형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
| 공제한도 | 4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400만 원) | 900만 원(600만 원) | |
| 공제율 | 한계세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 그 이하 16.5% | | | |
| 가입률 | 14.8% | 14.1% | 13.2% | 11.2% | 9.9% |
| 수입보험료 | 8.9조 원 | 8.8조 원 | 8.7조 원 | 7.0조 원 | 5.4조 원 |

주: 1) 가입률은 과세대상근로소득자(총급여) 중에서 납부액이 있는 자(과세 및 비과세대상 모두 포함)의 비율임

2) 공제한도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공제한도의 합산이며, ()안은 연금저축만 대상으로 한 공제한도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보험개발원(2023), 『2023 KIDI 은퇴시장리포트』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특히, 2014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저소득층(2천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율(16.5%)이 자신의 한계세율(소득공제 적용 시 혜택률)보다 높아 그 격차만큼 추가적 세제혜택이 생겨 가입 제고를 유인할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기간 소득(총급여) 또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부액은 오히려 감소함³⁾

- 보험소비자조사(2016)⁴⁾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90.6%가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16.5%(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복잡한 세율 체계 변화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이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는 여러 원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3) 강성호(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4)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나.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납입유형에 따라 일시납, 월납, 종신연금이 있으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 시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됨
 - 일정한 요건으로, 일시납 계약인 경우 연금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⁵⁾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월납인 경우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한도 150만 원)해야 하며, 종신연금 계약일 경우 55세 이후 종신행태로 수령해야 해당 보험차익이 비과세됨

〈표 3〉 연금보험의 납입유형 및 세제 특성

| 구분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 | |
|------|---|-------------------------------|--|
| | 일시납 | 월납 | 종신연금 |
| 납입유형 |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 & 10년 이상 유지 |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한도 150만 원) | 55세 이후 종신연금 지급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 & 연간 연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납입액, 유지기간 조건 없음) |
| 세제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적용 안됨 • 급부 시 10년 이상: 비과세⁶⁾(10년 이내 혹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 | |
| 기타 |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예금자보호금액 1억 원 적용 | | |

주: 서울은 지방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을 보완하여 면세자에게 자산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고소득층의 절세기회로 활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의 강화(월 150만 원 한도 등)로 세제혜택이 축소됨
 - 연금저축은 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면세자에게 가입 유인이 약한 반면, 연금보험은 수급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어 면세자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으나,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그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됨
 - 세제혜택 축소가 연금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킴에 따라 일반연금은 2013년 21.2조 원에서 2022년 15.6조 원, 변액연금은 2013년 11조 원에서 2022년 4.5조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⁷⁾

다. 과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① 공제한도의 경직성 및 비과세혜택 축소, ②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한 지원, ③ 연금화 유인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5)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행 연금보험’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①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3항 1호). 2017년 4월 이전은 2억 원임

6) ①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 2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5년 이상 월적립, 균등 보험료)’에 근거하여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됨

7) 보험개발원(2023), 『2023 KIDI 은퇴시장리포트』

- 연금저축은 공제방식 전환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였지만 중도인출 및 해지에 따른 보충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이고,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함으로써 가입 유인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서 2014년 제도개혁 과정에서 가입자의 소득(총급여)이 증가하였음에도 가입 유인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연금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낮을 수 있음
- 현행 정책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5,500만 원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할 뿐 자영업자, 경력단절자, 50대 퇴직 직전에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집단 등 집단 특성을 고려한 연금세제 정책이 되지 못함
- 연금저축의 적립금이 적어 연금소득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금세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⁸⁾은 연금화 유인을 약화시킴
 - 일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일시금의 실효세율을 낮추므로 연금화 유인이 감소됨

3. 주요국의 연금세제의 특징과 시사점

가. 납입·공제한도

1)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 영국과 호주는 미사용 납입 한도를 이월하여 가입자의 생애 주기별 소득 변동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납입과 공제한도를 이월하는 제도(공제한도이월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노후자산을 탄력적으로 관리함
 - 영국의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함)은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연간 통합 한도 60,000파운드를 적용하며, 직전 3개년의 미사용 한도를 당해 연도로 이월하여 일시에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호주 또한 2025/2026년 기준 세전 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s)⁹⁾에 대해 5년 치(연 3만AUD), 세후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에 대해 3년 치(연 12만AUD, 최대 36만AUD)를 이월할 수 있음
- 영국과 호주는 가입자에게 환급되는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을 자동으로 연금계좌로 환입하는 연금계좌환류제도를 통해 연금의 적립기능을 제고하고 있음
 - 영국은 원천경감제도(Relief at Source: RAS)를 통해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연간 2,880파운드까지 기여 시 기본 세율(20%)에 해당하는 720파운드를 개인연금 계좌로 추가 불입하여 총 3,600파운드의 연금자산을 증식시킴
 - 호주의 'LISTO' 제도는 연 소득 37,000AUD 이하 근로자가 납입 시 부담한 기여세(15%)를 최대 500AUD까지 국세청(ATO)이 연금 계좌로 자동 환급하되, 해당 금액은 보험료로 적립함으로써 연금자산의 누수를 차단함

8) 연말정산 시 전체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금액(공제대상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동 비율이 크면 과표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함

9) '세전 기여금'은 과세를 적용하기 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기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총급여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후 기여금'은 과세를 적용한 후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기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임

2)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

- 호주는 세후소득으로 기여할 경우(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3년의 기여금 이월제도(3-Year Bring Forward Rule)’¹⁰⁾를 통해 노후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세전 기여에 비해 세후 기여는 생애 동안 적립할 수 있는 최대 한도(생애 적립금 한도)를 설정하며, 세후 기여금에 대해 3년 치(생애 120,000AUD, 이월 시 최대 360,000AUD)를 한도 이월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Roth IRA는 납부 시 보험료를 소득공제하지 않고 수령 시 운용수익을 비과세하는 형태로, 저축성보험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성 자산(펀드 투자 등)에 운용되는 연금계좌임
 - Roth IRA는 2026년 기준 연간 납입 한도가 7,500달러로, 수정조정총소득(MAGI) 수준에 따라 독신 153,000~168,000달러, 부부 242,000~252,000달러 내에서 납입이 가능함
- 독일의 개인연금보험은 수급 시 부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비과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비적격연금보험과 유사하나 펀드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함
 - 개인연금보험은 가입단계에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지만 수급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펀드연계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클래식 연금보험 등이 있음

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과 무소득 배우자 등 면세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있는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매칭형 보조금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완화함
 - 미국의 배우자 IRA(Spousal IRA)는 무소득 배우자를 위해 소득활동 배우자가 대신 기여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50세 이상 8,600달러, 2026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가구 단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
 - 또한 2027년부터 시행될 세이버 매칭(Saver’s Match) 제도는 저소득 혹은 면세 가입자의 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50%(연간 2,000달러 납입 기준 1,000달러)를 환급하는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독일은 정부 보조금과 소득공제를 결합한 이중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리스터연금(Riester-Rente)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음

10) <https://www.amp.com.au/insights-hub/super/growing-your-super/super-bring-forward-rules>; <https://superannuationwarehouse.com.au/3-year-bring-forward-rule/>;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super-for-individuals-and-families/super/growing-and-keeping-track-of-your-super/caps-limits-and-tax-on-super-contributions/non-concessional-contributions-cap>

-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 소득의 4%를 납입할 경우 기본 보조금(연 175유로)과 자녀 보조금(1인당 연 300유로)을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며, 25세 이하 가입자에게는 200유로의 가입 보너스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 면세자도 최소 60유로만 납입하면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산출된 세금 혜택이 보조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 환급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

- 호주의 Super Co-Contribution은 중산층 이하 과세자가 세후소득으로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납입할 경우 최대 \$500까지 기여금(Co-Contribution)을 지원받음
 - 본인의 기여한도는 2024~2025년 연간 \$120,000이며, 해당 기준액은 물가, 임금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¹¹⁾

〈표 4〉 연금세제 제도 비교(우리나라 vs. 주요국)

| 구분 | 우리나라 | 주요국(영국·호주·미국·독일·일본) |
|----------------|---|--|
| 납입·공제한도 유연성 | 연금저축 IRP: 연 1,800만 원 납입 (공제한도 900만 원, 이월 불가) | 영국: 미사용 한도 3년 이월 호주: 5년 이월(Bring-forward) |
| 계좌환류 | 세액공제는 현금으로 환급 | 영국(RAS), 호주(LISTO): 세제혜택을 계좌로 다시 적립 |
| 투자 운용 범위 | 연금저축 IRP는 상품 유형 제한 보수적 운용 | 미국 Roth IRA 등은 투자성 상품에 적극 투자 |
| 취약계층 지원 | 세액공제여서 면세자·저소득층 효과 제한적 | 미국: Spousal IRA·Saver's Match, 독일: 리스터 보조금, 호주: Co-Contribution |
| 연금화 유인 | 연금저축 일시금: 기타소득세 16.5%, 연금 수령 세율은 낮음 | 미국: 10% 가산세, 영국: 25%만 비과세, 호주: 연령별 증과, 독일: 70% 연금의무 |
| 정책 목표 연계성 | 세액공제 중심, 적립·연금화 연계 약함 | 보조금·과세·규율을 결합한 행태유도형 설계 |

다. 연금화 유인

- 주요국은 일시금 인출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연금 수령 시 저세율의 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인출(연금화)을 유도함
 - 미국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 59.5세 이전에 중도인출 시 10%의 연방 가산세를 부과함
 - 또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 소득(종합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낮은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 연금 계좌로 '자산 이전(Rollover)'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금화를 추진함
- 영국은 일시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그 상한을 엄격히 설정하고, 호주는 조기수급 방지를 위해 연령 별 차등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함

11) Australian Taxation Office,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 영국은 55세 이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최대 25%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음
- 호주는 60세 이후 수령 시 일시금과 연금 모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나, 60세 이전에 조기 인출 시에는 수령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한계세율을 적용해 엄격히 과세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조기 소진을 억제함

○ 독일과 일본도 일시금 수령에 대해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연금 형태의 수령 시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연금화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적립금의 최대 30%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함
- 일본은 수령 형태에 따라 연금은 '잡소득(공적연금공제 적용)', 일시금은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및 1/2 과세 적용)'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 유리하도록 설계함
 -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수령액은 5%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퇴직소득인 일시금은 공제 후 잔액의 1/2에 대해 동일한 5~45%의 누진세율을 부과함

4. 정책방향

○ 개인연금 세제정책은 국가별 제도와 여건이 달라 획일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입(적립)과 연금화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선진국의 연금소득세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세제 개편 방향은 납입·공제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면세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금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의 중도인출이나 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액공제 이월제(예: 3년 또는 5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금세제혜택이 노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환류하는 제도(연금계좌환류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적립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연금계좌환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이 퇴직 시점까지 이연되는 데 따른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므로, 해당 세액공제액과 그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면세자, 전업주부 등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칭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지기간 조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를 통해 동 집단의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또는 한도 확대를

허용해 은퇴시점까지 노후자산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부담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탄력적 연금과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 연금세제 정책방향

| 구분 |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IRP) |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 등) |
|--------------|--|---|
| 납입 강화 유연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이월제(3~5년) 도입으로 적립 공백 보완 • 연금계좌환류제 도입을 통해 노후자산 제고 | 월납한도(월 150만 원) 이월제 도입으로 적립 공백 보완 |
| 취약계층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자·전업주부 등에게 매칭형 보조금 도입 • 50대 퇴직 직전 층에 추가 세액공제 또는 공제한도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해 유지기간 요건 완화(10년→7년) |
| 연금화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금 공제율 축소·세부담 강화 • 확보 재원으로 연금 수령 시 추가 세제혜택(탄력적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납 및 일시납 계약에 대해 일시금 수령 시 비과세를 축소하고, 연금 형태 수령 시 비과세·경감 혜택 강화 |